

고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
( 의안번호 제447호 )

심사 보고서

1997. 11.

총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7. 11. 22

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 : 1997. 11. 26

다. 상정·의결일자 : 1997. 11. 26

상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이유

○ 직제개편 및 사무분장이 조정되었음에도 정비되지 아니한 조문은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○ 고성군체육진흥협의회의 간사가 종전에는 사회진흥과장이던 것을 문화공보실장으로 하고, 종전에는 서기를 의장이 지명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광체육계장으로 함.  
(안 제7조제2항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4조에 의거 체육단체 업무가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종전의 사회진흥과 소관에서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사무분장이 변경되므로 인하여 관련 조문을 개선 보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론 : 없음

7. 심사결과 : 1997. 11. 2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